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규정〉

■ 한기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745호)

2025. 4.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3
1. 총괄 검토	3
가. 입법 배경	3
나. 병역이행자 지원 필요성	4
나. 제정안의 구성 및 체계	9
2. 주요 내용별 검토	11
가. 정의 규정(안 제2조)	11
나. 병역이행자 지원정책심의위원회 설치(안 제6조)	14
다. 전역지원금 지급(안 제9조)	18
라. 취·창업활동 지원(안 제10조)	21
마.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의 가산점 부여(안 제13조)	24
바. 기타(안 제14조 및 제16조)	30
※ 참고자료	32

I. 제안경위

1. 제안자 : 한기호의원 등 10인
2. 제안일 : 2025. 1. 23.
3. 회부일 : 2025. 1. 31.

II.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제대 후 직업교육훈련,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 다양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헌법 및 「병역법」 등에 따라 병역을 이행한 대다수의 병역이행자에 대해서는 「병역법」에서 병역 이행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 금지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업이나 취업을 중단하고 병역을 이행한 다수의 청년들은 제대 후 경제적 고충과 사회복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헌법상 국방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한 사람에 대하여 군복무에 따라 발생한 기회비용을 보전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여 병역 이행이 존중받는 사회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 가. 국가보훈부장관은 병역이행자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함(안 제5조).
- 나. 병역이행자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병역이행자 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조).
- 다.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안 제7조).
- 라. 병역이행자가 그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거나 소집해제된 경우에는 전역지원금을 지급함(안 제9조).
- 마. 병역을 이행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병역이행자에 대해 직업교육 훈련,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바. 병역이행자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그 복무기간 만큼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고자 함(안 제11조).
- 사. 병역을 이행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병역이행자 등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시험 등에 응시하려 할 경우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아. 병역이행자 등이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 점수를 가산하고자 함(안 제13조).

IV.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가. 입법 배경

□ 제정안은 병역이행자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병역이행자의 고용 촉진 및 전역지원금 지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가산점 부여, 국가 기술자격시험의 수수료 면제 등 병역이행자의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현행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군인법”)에 따라 취업·교육·의료·대부 등 각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내용이 대부분 중·장기 복무자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병역이행자에 대한 지원은 취업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응시연령 상한 연장과 군 복무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고, 군 복무 중에 전상이나 공상을 입어 전역한 자에 한하여 일부 진료비를 지원하는 데 그치는 등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있음.¹⁾

□ 헌법 제39조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현역 의무

1) 남광규, 2020,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훈논총」

복무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1년 6개월~3년에 걸친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희생함으로써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으며,²⁾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과 혜택이 이루어지지 않아 병역의무가 일방적 희생이라는 부정적인 인식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³⁾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관련 설문조사에서 국민들 중 90% 이상이 동의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군 의무복무로 인한 사회경쟁력 저하, 사회진출 지연, 국가에 대한 희생과 봉사의 순으로 나타남.⁴⁾

- 이러한 측면에서 이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의무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고, 나아가 병역의무를 마침으로써 국가와 사회로부터 인센티브가 보장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나. 병역이행자 지원 필요성

□ 병역이행자에 대한 지원의 역사는 1961년에 「군사원호대상자

2) 이영환, 2003, “의무복무 사병들의 삶의 질과 복지문제”, 「상황과 복지」 16

3) 국가보훈부가 의무복무 장병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의무복무를 마치면 사회생활에서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56.7%만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현역으로 의무복무를 하지 않은 여성이나 군복무 면제자가 부러운 정도를 묻는 질문에 60%가 그렇다고 응답함.

4) 국가보훈처. 2019. 「제대군인 대부 지원」.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일자리과

임용법」 및 「군사원호대상자 고용법」 제정 시 규정한 취업지원
 에서부터 시작됨. 주요 내용은 ① 공무원 시험에서 5% 가산점 부여,
 ② 임용서열 결정 시 동점자가 있는 경우 제대군인 우선 임용,
 ③ 군명예제대 후 입대 전 근무기관에 복직을 희망할 경우 당연
 복직, ④ 국·공영기업체 및 일반업체에서 전체 고용인원의 20%에
 해당하는 제대군인 의무고용 등임.⁵⁾ 이후 부분적인 변화는 있었지만
 큰 틀은 계속 유지되었으며, 1998년 7월 「제대군인법」이 제정·
 시행되면서부터 법적으로 종합적인 보훈지원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함.
 이 법 제정을 계기로 제대군인 지원을 독립된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문화적 측면에서의 제대군인 본인 및 자녀에 대한 교육보호,
 경제·사회적 측면에서의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등 의료보호와
 호국용사묘지 안장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기 시작함.⁶⁾

□ 병역이행자에 대한 자원과 보상이 필요하다는 본격적인 논의와
 관심은 1999년 헌법재판소가 채용시험에서 과목별 5%의 가산점을
 주던 군가산점제도를 위헌으로 결정해 이를 폐지하면서부터로 볼 수
 있음.⁷⁾ 병역이행자들은 대부분 군입대로 인해 학업을 중도에 중단
 하고 군복무를 함으로써 병역 미필자에 비해 졸업 이후 취업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실정임. 특히 병역이행자에 주어졌던 공직임용

5) 황미경·양정훈, 2018. “제대군인 보훈복지정책 비교연구 : 한국과 러시아 중심으로”, 한국보훈논총 17(3)

6) 유영옥, 2009, “각국의 보훈정책비교론”, 서울: 홍익재

7) 남광규, 2020, 전제서

시험 가산점 혜택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없어짐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졌음.⁸⁾

□ 이를 계기로 제대군인, 그중 병역이행자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음. 기본적으로 병역이행자 지원정책은 병역이행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통한 사회통합과 국가안보 강화, 국가인력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기능이 있음.⁹⁾ 장기적으로 군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관리하는 것은 국가인적자원 개발의 성패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단기적으로 병역이행자에 대한 전직 지원은 군 복무 시 전투력 유지와 복무 기간 중 사기 진작과 복무의욕 고취의 핵심요소임.¹⁰⁾ 따라서 병역이행 중 국방의무에 충실하면서도 개인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전역 후 사회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청되고 있음.¹¹⁾

□ 이에 제정안은 병역이행자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 국가가 경제적인 보상과 제도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음.

8) 정현영, 2014, “제대군인 취업지원의 현황과 과제”, 한국보훈논총 13(2)

9) 채내희, 2003, “한국의 제대군인 지원제도 발전과제”, 한국군사 17

10) 국방부, 2017, “전직성공사례집”, 서울: 국방전직교육원

11) 이정표, 2005, “군 인적자원개발의 추진경과와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현행 지원사항 및 제정안 추가 지원사항 비교 ＞

구분	내용
현행법상 지원사항	군 경력 호봉에 반영
	채용시 군 복무기간만큼 응시연령 상한 연장
	군 복무 중 입은 상이처 또는 중증·난치성 질환에 대해 의료지원
제정안 추가 지원사항	전역지원금 지급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병역이행자 취(창)업지원 신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취업 후 18개월간)
	공무원 및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전역 후 5년간)
	공무원 채용시험에 가산점 부여 등

자료 : 국가보훈부

- 다만, 제정안에 따르면 전역지원금 지급 및 취·창업지원 등에 국가 재정이 소요되고, 공무원 시험 가산점 부여는 병역의무대상에서 제외되는 여성이나 장애인 등의 고용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제정안 심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제정안의 지원대상, 내용 등은 현행 법률 및 기 시행 중인 제도와 일부 중복되는 면이 존재함.
- 현행 「제대군인법」 상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병역이행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 법률 및 각종 정부지원 등을 통해 병역이행자를 포함한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음.

- 취·창업지원의 경우, 현행 「제대군인법」 및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의 지원대상, 내용 등과 중복되는 측면이 존재함.
- 전역지원금 지원의 경우, 최근 병사에 대한 처우가 급격히 개선되어 2025년 병장 기준 150만원의 월급을 지급 중이며,¹²⁾ 병사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전역 후 ‘내일 준비지원금’¹³⁾으로 최대 약 100만원이 별도로 지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제정안은 다양한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시행함에는 수천억원대의 재정소요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산됨.

- 전역지원금 지원, 취·창업지원,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등에 추가로 재정이 소요될 것인바, 국가보훈부에 의하면 연간 약 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

□ 셋째, 제정안은 병역이행자에게 6급 이하 공무원 필기시험 만점의 1%~3%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1999년)에서 지적한 ‘여성과 장애인 등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 침해’라는 위헌적 요소가 여전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12) 2025년 기준 이병 75만원, 일병 90만원, 상병 120만원, 병장 150만원

13) 병사가 내일준비적금 가입(최대 월 55만원 / 복무기간만큼 납입 가능) 후 만기 시 병사 본인납입금과 동일한 금액만큼 정부가 추가 지급(적금만기액의 절반)

- 따라서 제정안을 심사하는데 있어서는, 동 제정안의 취지·목적, 기존 법률과의 관계, 재정소요 및 군가산점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 제정안처럼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기보다는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병역이행자 지원의 실질화 방안을 강구하고, 「제대군인법」의 지원대상 및 수준 확대를 논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제정안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제정안의 지원대상, 내용 등이 현행 법률 및 기 시행 중인 제도와 일부 중복됨을 이유로 별도 법률 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 제정안의 구성 및 체계

- 제정안은 총칙에서 목적,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국가 등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 실체 규정에서는 병역이행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전역지원금 지급 및 취업 지원 등 총 1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구성 체계 >

조	조제목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병역이행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제2조	정의	병역이행자 정의 규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 이 법 적용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자체는 사회복귀와 생활 안정을 위해 시책 강구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기본계획(5년 주기)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제6조	병역이행자 지원정책심의회 설치	병역의무자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
제7조	지원 신청 등	적용 대상 및 시기 규정
제8조	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	지원받을 권리 발생 및 소멸 시기 규정
제9조	전역지원금 지급	전역지원금 지급 대상 및 환수 요건 규정
제10조	취업 지원	직업교육훈련, 창업상담 및 교육 등 지원
제11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	복무기간만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제12조	수수료의 감면	공무원 채용시험 및 기술자격검정시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 응시수수료 감면
제13조	채용 시의 우대 등	6급 이하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 시 1.5%~3% 가산점 부여
제14조	자료의 제공요청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제공 요청 근거 명시
제15조	위임 및 위탁	각 시·도지사 등에게 관련 업무 위임 및 위탁
제16조	벌칙	벌칙 부과

2. 주요 내용별 검토

가. 정의 규정(안 제2조)

- 제정안 제2조는 법률의 적용대상자인 “병역이행자”를 현역병, 전환복무자(의무경찰·소방),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으로 열거하고 있음.¹⁴⁾

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병역이행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1년 이상 복무한 경우를 말한다)를 마치고 전역(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을 말한다.
1.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
2. 「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환복무
3.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4.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14)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

나.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將校)·준사관(準士官)·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후보생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전환복무”란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복무하도록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8. “상근예비역”이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入營)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지역방위(地域防衛)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사회복무요원”(社會服務要員)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단체(公共團體)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 「병역법」(현역병 등) 또는 「군인사법」(단기장교 및 부사관)에 따라 의무복무를 이행하는 사람은 아래와 같이 다양하지만, 제정안은 현역병 및 현역병과 유사한 수준의 관리·감독을 받는 대상자만 포함한 것으로 보임.

○ 승선근무예비역·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등 일부 보충역은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다른 의무복무 제대 군인보다 급여 수준이 높고 취업 승계도 일부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이해됨.

<병역의무이행자 유형별 비교표>

구분	신분	복무기간	복무내용	급여	감독기관
현역병	군인	18개월(육군) 18개월(해병) 20개월(해군) 21개월(공군)	국토방위	병장 150만원	국방부
단기복무 장교		ROTC 28개월 학사장교 등 3년		소위 ~ 중위 수준	
단기복무 부사관		4년			
의무경찰	전환복무 자	18개월	치안유지	현역병과 동일	경찰청
의무경찰(해양)		20개월	해양안전		해양경찰청
의무소방원		20개월	재난안전·구조		소방청
사회복무요원	보충역	21개월	공공서비스 제공		국가,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
공익법무관		3년	국가기관, 지자체에서 법률사무 지원	중위 수준	법무부
공중보건 의사		3년	보건소에서 의료지원	중위 ~ 대위 수준	보건복지부
공중방역 수의사		3년	방역기관에서 가축방역 지원	중위 수준	농림축산 식품부
병역판정검사 전담 의사		3년	병무청에서 신체검사 전담	중위 ~ 대위 수준	병무청

구분	신분	복무기간	복무내용	급여	감독기관
승선근무 예비역		3년	항해·기관사로 해운업체에서 승선원으로 근무	민간 근무자 수준	해양수산부
산업기능요원		34개월	산업체에서 제조·생산		병무청
전문연구요원		3년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근무		병무청
예술·체육요원		34개월	예술·체육분야 종사	-	문화체육 관광부
대체복무요원	대체역	3년	교정시설 지원	현역병과 동일	법무부 (교정본부)

※ 파란색 부분이 제정안의 병역의무이행자에 포함

※※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은 '22년부터 모집중단 // 대체복무요원은 '20년부터 모집시작

자료 : 국가보훈부

나. 병역이행자 지원정책심의위원회 설치(안 제6조)

- 제정안 제6조는 병역이행자의 지원에 관한 정책 및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에 병역이행자 지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위원회”이라고 함)를 설치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6조(병역이행자 지원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병역이행자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병역이행자 지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병역이행자 지원과 관련된 각종 조사, 연구 및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4. 병역이행자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국방·경제·교육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은 정책심의위원회 설치를 통해 병역이행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 병역이행자의 실태조사 등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병역의무이행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갖추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¹⁵⁾ 제정안에 따른 정책심의위원회는 국가보훈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보훈위원회’와 그 기능이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¹⁶⁾

<병역의무이행자 지원정책심의위원회와 국가보훈위원회 기능 비교>

병역이행자 지원정책심의위원회	국가보훈위원회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병역의무이행자 지원과 관련된 각종 조사, 연구 및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4. 병역의무이행자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병역의무이행자 지원에 관한 중요	1. 국가보훈정책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보훈문화 창달 및 애국심 고취에 관한 중요 사항 4. 국가보훈대상자의 신규인정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5.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 기준의 결정 등 국가보훈에 관한 중요 사항

1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략)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자문위원회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6) 「국가보훈 기본법」 제11조(국가보훈위원회) 국가보훈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보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병역이행자 지원정책심의위원회	국가보훈위원회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국가보훈에 관한 중요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7. <u>제대군인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u> 8. 그 밖에 위원장이 국가보훈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료 :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11조
▶ 구성 : 35명 이내(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 포함)
– (당연직) 국무총리(위원장), 관계부처* 등 15명 / (위촉직) 민간위원 20명 이내
* 보훈(부위원장)·기재·교육·외교·통일·법무·국방·행안·문화·산업·보건·고용·여성·국토

자료 : 국가보훈부

<최근 국가보훈위원회에서 심의한 병역이행자 관련 정책>

구분	주요내용
제3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2014~2018)	○ 단기·의무복무자 사회적 보상 확대 방안 마련 – 학업과정 단절로 인한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학업복귀 지원 – 단기·의무복무자 취업 시 경력인정 등 지원
제4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2018~2022)	○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 강화 – 의무복무의 특수성을 감안한 등록심사체계 마련 – 의료지원, 취업·교육지원, 복지지원 강화
제5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2023~2027)	○ 생애주기별 사회복귀 지원체계로 개편 – 의무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 제도 도입 추진 * 군 복무 학점인정제, 군 복무 기간에 따른 국민연금 기간 확대 등 검토

자료 : 국가보훈부

□ 제정안에 대하여 국가보훈부 및 행정안전부는 위원회 난립에 관한 지속적인 국회 지적과 국민들의 비판적인 시각을 고려하여 새로운 위원회 설치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 시 기존 국가보훈부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다. 전역지원금 지급(안 제9조)

- ☐ 제정안 제9조는 병역의무를 마치고 전역하거나 소집해제된 병역이행자에게 전역지원금을 지원하되, 그 지원금액 및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9조(전역지원금의 지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병역이행자가 그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거나 소집해제된 경우에는 전역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병역이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역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또는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의하여 현역 복무 부적합으로 전역한 경우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역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역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역지원금 지급을 받은 경우 2. 전역지원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전역지원금의 지급액, 지급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환수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대군인법」에 따라 5년 이상 중·장기 복무한 제대군인은 취업·창업·교육 지원 등 각종 지원을 받고 있으나,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등

단기 복무한 병역이행자의 경우 채용시험 응시 연령 상한 연장 및 군경력 호봉 반영 외 실질적인 지원은 없어 이들은 의무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과 사회 복귀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¹⁷⁾

- 또한, 국가보훈부가 2018년 병역이행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병역이행자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이 제대지원금이라는 응답이 4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 병역의무이행자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 >

구 분	인원(명)	비율(%)
① 제대지원금 지원	211	44.1
② 군복무기간 경력 인정	139	29.1
③ 취업 지원(진로 및 취업상담 등)	60	12.6
④ 의무복무 근무기간만큼 정년 연장	44	9.2
⑤ 학자금 대부 및 이자 지원	19	4
⑥ 필요 없음	5	1

자료: 「의무복무 제대군인 및 여성 제대군인 지원정책 연구」, 국가보훈처, 2018.8.30.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제정안은 병역이행자에게 전역지원금을 지급하여 이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 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국방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병역이행자의 희생·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일응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 다만, 최근 정부는 병사에 대한 처우를 급격히 개선하여 2025년 병장 기준 150만원의 월급을 지급 중이며,¹⁸⁾ 병사의 원활한 사회

17) [참고1] 현행 제대군인 지원제도 개관(21쪽) 참조

18) 2025년 기준 이병 75만원, 일병 90만원, 상병 120만원, 병장 150만원

복귀를 위해 전역 후 ‘내일 준비지원금’¹⁹⁾으로 최대 약 100만원을 별도로 지원 중임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2015년과 2025년 병사 월급 등 비교 >

(단위 : 원)

연도별 구분	이병		일병		상병		병장	
	2015	2025	2015	2025	2015	2025	2015	2025
월급	129,400	750,000	140,000	900,000	154,800	1,200,000	171,400	1,500,000
내일 준비지원금	-	550,000	-	550,000	-	550,000	-	550,000
계	129,400	1,300,000	140,000	1,450,000	154,800	1,750,000	171,400	2,050,000

* 25년 병 내일준비지원사업 시행지침 참고 시, '22년부터 매칭지원금 지급 시작

자료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병사 월급 인상 및 사회복귀 지원금 등을 감안할 때 전역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경우 중복 지원의 우려가 있으며 사회적 공감대 및 국가재정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²⁰⁾

19) 병사가 내일준비적금 가입(최대 월 55만원 / 복무기간만큼 납입 가능) 후 만기 시 병사 본인납입금과 동일한 금액만큼 정부가 추가 지급(적금만기액의 절반)

20)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연간 병역이행자 전역지원금 지급에는 약 1,49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지급액 58만원[2025년 중기복무자 전직지원금과 같음] 기준)

라. 취·창업활동 지원(안 제10조)

- ☐ 제정안은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병역이행자에게 직업교육 훈련, 창업 상담 및 교육 등의 취·창업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0조(취업지원) ① 국가는 병역을 이행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병역이행자에 대하여 병역 이행에 따른 취업준비 지연 등을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정안은 장기간 군 복무로 인해 사회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역이행자에게 취·창업 활동을 지원하여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돕고,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보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인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일응 긍정적임.

- ☐ 다만, 제정안에 따른 취업지원 범위를 살펴보면, 지원 대상은 병역 이행자 전역 후 3년간에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15~34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²¹⁾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과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경상이자, 저소득 모범장병, 취업맞춤특기병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행 「제대군인법」²²⁾의

21) 국민취업지원제도는 35~69세 중·장년 구직자에게 소득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충족을 요구하는 반면, 18~34세 청년 구직자는 소득기준 無

대상과 대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며, 제정안의 “직업교육훈련 · 취업상담 및 창업교육” 또한 기존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현행 「제대군인법」의 취업지원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제대군인법」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과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경상이자, 저소득 모범장병, 취업맞춤특기병에 한하여 취창업지원을 실시 중인바,²³⁾ 제정안처럼 별도의 규정을 두기보다는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제대군인 지원의 실질화 방안을 강구하고 「제대군인법」의 지원대상 확대를 논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2)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업교육훈련)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중·장기복무 전역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추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제14조(취업지원 등)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2.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④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 실시 횟수 및 그 밖에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취(창)업 지원 필요 대상에 관한 고시」 제2조(적용대상) 국가보훈부장관은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17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신청을 받아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 창업상담 또는 창업교육 등(이하 "취(창)업지원"이라 한다)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병무청 기준에 따라 입영 전 기술훈련을 받고 이와 연계된 분야의 기술병으로 복무한 후 전역한 취업맞춤특기병

2. 모범적으로 병역생활을 하여 국방부에서 저소득·모범 장병으로 선발된 사람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취(창)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최근 5년간 「제대군인법」 지원대상인원>

구분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경상이자	3,504	864	880	597	696	467
취업맞춤특기병	7,818	1,446	1,554	1,778	1,807	1,233
저소득·모범장병	381	119	112	36	91	23

자료 : 국가보훈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국가보훈부의 취·창업지원제도 비교>

구분	고용노동부(국민취업지원제도)	국가보훈부
지원 대상	☞ 15~34세 청년층 ☞ 35~69세 중장년층(중위소득 100% 이하) ☞ 특정계층(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의무복무 제대군인 (경상이자, 저소득 모범장병,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내용	☞ 내일배움카드(300~500만원) ※ 고용부 지정 훈련기관에서 훈련비로 사용 (기본 300만원 / 비정규직, 중위소득 60% 이하자 등에게 200만원 추가 지원) ☞ 훈련참여지원수당(28.4만원×6개월) ※ 직업훈련 참여 및 80% 이상 출석시 ☞ 취업성공수당(6개월 근속 50만원, 12개월 근속 100만원) ※ 중위소득 60% 이하 ☞ 구직촉진수당(50~90만원×6개월) ※ 중위소득 120% 이하, 기본 50만원 및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추가 ☞ 취(창)업상담, 취업알선 등(고용센터)	☞ 직업능력개발교육비(150만원) ※ 중·장기복무 제대(예정)군인 ☞ 전문기관 위탁교육비(120만원) ※ 중·장기복무 제대(예정)군인 ☞ 사이버교육 ※ 중·장기복무 제대(예정)군인 + 의무복무 제대군인(경상이자, 저소득 모범장병, 취업맞춤특기병) ☞ 취(창)업상담, 취업알선 등(제군센터)

자료 : 국가보훈부

다.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의 가산점 부여(안 제13조)

- 제정안은 병역이행자,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지원에 의해 군 복무를 마친 여성 포함)이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병역 이행 유형별로 1%에서 3%까지 가산점을 부여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3조(채용 시의 우대 등)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가능 횟수 및 기간 동안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의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공개채용 기관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 1. 제2호 외의 병역이행자: 필기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1000분의 10 2.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병역이행자로서 5년 이하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 필기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1000분의 15 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기복무 제대군인: 필기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1000분의 20 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필기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1000분의 30

<법률안에 따른 가산점 지원대상>

- ① 1% 가산 : 제2조(정의)에 규정된 병역이행자(현역, 전환복무,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로 ②번(1.5% 가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② 1.5% 가산 : 병역이행자로 5년 이하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
- ③ 2% 가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기복무 제대군인
- ④ 3% 가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 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9.12.23. 98헌마363)에 의해 폐지된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으로 이해됨.

○ 위헌결정된 종전의 가산점제도와 비교해 보면, ① 가점 수준을 종전의 각 과목별 만점의 3%~5%에서 1%~3%로 축소하여 가산점이 합격 여부에 미치는 효과를 낮추고, ② 적용 대상을 지원하여 현역 복무한 여성이나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확대하며, ③ 응시 가능 횟수 및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④ 적용 기관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함으로써 응시 기회의 불평등을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위헌결정 (구)법률의 내용과 제정안 비교>

구 분	위헌결정 (구)법률의 주요 내용	제정안
관련조문	• (구)제대군인법 제8조(채용시험의 가점) • (구)시행령 제9조(채용시험의 가점비율 등)	• 제정안 제13조(채용 시 우대 등) • 시행령에 횟수 및 기간 제한(예정)
적용대상	• 현역병·상근예비역	• 현역병·전환복무자·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지원에 의한 현역 복무한 여성 포함)
가산점	• 2년 이상 복무: 5% • 2년 미만 복무: 3%	• 현역병 등: 1% • 5년 이하 장교·준사관·부사관: 1.5% • 중기복무 제대군인: 2% • 장기복무제대군인: 3%
횟수 및 기간	• 제한 없음	• 제한(시행령)
적용기관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6급 이하) • 초·중등학교 • 일상적으로 1일 20인 이상 고용업체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200인 미만 고용 제조업체 제외)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6급 이하)

○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는 전체여성 중의 극히 일부분만이 제대군인에 해당될 수 있는 반면, 남자의 대부분은 제대군인에 해당하므로 실질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고, 현역복무나 상근예비역 소집근무를 할 수 있는 신체건강한 남자와 그렇지 못한 남자, 즉 병역면제자와 보충역복무를 하게 되는 자를 차별하는 제도이며, 헌법 제32조제4항이 특별히 남녀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근로” 내지 “고용”의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을 달리 취급하는 제도이고, 또한 헌법 제25조에 의하여 보장된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함.

- 또한, 가산점제도는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없이 제대군인을 지원하려는 나머지 결과적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 비하여,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나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²⁴⁾에 위배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되고,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가 건강한가’와 같은 불합리한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5조²⁵⁾에 위배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됨.

□ 그러나, 제정안의 가산점 제도는 여전히 병역 미필자(여성과 장애인 포함) 등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 침해라는 위헌적 요소가 제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제정안은 아래와 같은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4)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25) 「대한민국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 먼저, 제정안에 따르면이라도 현역병 복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신체가 건강한지 여부에 따라 가산점의 부여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 여성·장애인이거나 심신 또는 질병 장애로 인한 병역면제자 등의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는 종전의 위헌적인 요소가 해소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둘째, 위헌결정 당시 「병역법」 상 여성이 제대군인이 될 수 있으나 그 비율이 극히 일부라는 점을 들어 여성을 차별하는 제도로 보았다는 점에서, 군 지원을 통해 전역한 일부 여성을 포함하고 있는 제정안이 여성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모두 제거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셋째, 제정안과 같이 전역 시 신분(병 또는 준·부사관, 장교)에 따라 가산점을 차등 부여하는 것이 병역이행자 간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한지에 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음.
- 결론적으로, 제정안의 내용이 위헌결정된 종전의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에 비하여 위헌적 요소를 덜어내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별과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가 건강한가’와 같은 불합리한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아울러, 제정안의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집단의 의견이 과도하게 대립되어 중대한 사회적 갈등이 초래될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제정안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 및 여성가족부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음.

○ 국가보훈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 여성과 장애인의 평등권, 공무원
담임권의 위헌적인 요소가 해소되지 않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여성가족부는 병역이행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필요하나, 공무원
채용시험의 가산점제도는 고용상의 남녀평등이나 장애인을 차별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바. 기타(안 제14조 및 제16조)

- 제정안 제14조 및 제16조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공요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시 벌칙 규정을 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4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벌칙) ①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개인정보 자료제출 요청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시 목적 명확화 및 최소수집 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을 감안할 때,²⁶⁾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경우 제출 요청의

26)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

목적 및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제공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목적 외의 용도로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²⁷⁾ 법률간 정합성을 위해 제정안의 벌칙 조항도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 6788- 5110

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27)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9.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7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참고1

현행 제대군인 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분야	지 원 내 용	근 거																											
의무복무제대군인 (5년 미만)	채용시협약 연령연장	❖ 2년 이상 복무 : 3세, ❖ 1~2년 복무 : 2세 ❖ 1년 미만 복무 : 1세	제16조①																											
	군경력 인정	❖ 호봉, 임금결정 시 군복무 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 * 취업지원실시기관(국가 및 지자체, 국·공립학교, 직원 20인 이상 재직 중인 기업 / 제조업은 200인) 권장사항	제16조③																											
	의치 료원	❖ 군 복무 중 부상(질병)으로 신체검사 등급미달 판정을 받은 경상 이자 대상으로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상이처에 한함)	제20조①																											
		❖ 군 복무 중 발병·악화된 중증질환 의료지원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비 50% 감면) * 의무복무 제대군인만 해당	제20조④																											
	취 직 영 원	❖ 진로지도·직업상담, 취업알선, 사이버교육 실시 *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경상이자, 저소득·모범장병, 취업맞춤특기병만 해당	제14조③																											
중기 복무 제대 군인 (5년이상 ~ 10년미만)	진 훈 영 원	❖ 전문교육기관 위탁훈련(1인당 120만원 한도, 총 3회가능, 자부담 10%) 직업능력개발 교육비(1인당 150만원 한도, 자부담 20%)	제13조①																											
	저 직 지 원 금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자에게 전직지원금 지급 * 월 58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	제18조의2																											
	법 률 구 조 지 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변호사비용, 인지액, 송달료 등 소송 비용 지원(군인연금 대상자 제외)	제23조의2																											
	기 타	❖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장사법 제23조의2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취 직 영 원	❖ 취업실시기관 보훈특별고용 실시(국가유공자 준용) ❖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제14조①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자에게 전직지원금 지급 * 월 81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	제18조의2																											
	교 지 영 원	❖ 본인 : 대학 입학금·수업료의 50%까지 감면 * 전역 3년 이내자 지원	제19조①																											
		❖ 자녀 : 고교 재학 자녀 수업료 전액 보조 * 21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실시	제19조②																											
	의 치 료 원	❖ 보훈병원(본인부담 진료비의 50% 감면) ❖ 군병원 : 응급처치 및 외래진료(본인부담 진료비의 50% 감면)	제20조②																											
	대 지 보 원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주택</th><th rowspan="2">사업</th><th rowspan="2">농토 구입</th><th rowspan="2">생활 안정</th><th rowspan="2">학자금</th></tr><tr><th>아파트 분양</th><th>주택구입 (신축)</th><th>주택 임차</th></tr><tr><td>한도 (만원)</td><td>4,000~ 8,000</td><td>4,000~ 8,000</td><td>2,000~ 5,200</td><td>2,000</td><td>3,000</td><td>300</td><td>학기당 500</td></tr><tr><td>연리(%)</td><td>3.5</td><td>3.5</td><td>3.5</td><td>4.5</td><td>3.5</td><td>3.5</td><td>4.5</td></tr></table>	구분	주택			사업	농토 구입	생활 안정	학자금	아파트 분양	주택구입 (신축)	주택 임차	한도 (만원)	4,000~ 8,000	4,000~ 8,000	2,000~ 5,200	2,000	3,000	300	학기당 500	연리(%)	3.5	3.5	3.5	4.5	3.5	3.5	4.5	제21조
	구분	주택			사업	농토 구입					생활 안정	학자금																		
		아파트 분양	주택구입 (신축)	주택 임차																										
한도 (만원)	4,000~ 8,000	4,000~ 8,000	2,000~ 5,200	2,000	3,000	300	학기당 500																							
연리(%)	3.5	3.5	3.5	4.5	3.5	3.5	4.5																							
주 택 우 선 공 급	❖ 「공공주택 우선공급(기관추천 아파트특별공급)」 대상에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 포함 (주택법 근거)	제22조																												
아 지 장 원	❖ 국립현충원 안장(20년 이상), 국립호국원 안장(10년 이상)	국립묘지법 제5조																												

□ 설치 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11조

- 국가보훈에 관한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를 위해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설치*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보훈부장관으로 전환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24.2.13.)

** 단, 범부처 차원의 원활한 보훈정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은 국무총리 유지

□ 위원회 구성 : 국가보훈기본법 제13조

- (구성)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 국무총리(위원장), 관계부처* 등 15명
 - * 보훈(부위원장)·기재·교육·외교·통일·법무·국방·행안·문화·산업·보건·고용·여성·국토
 - (위촉직) 민간위원 20명 이내 (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

□ 민간위원 위촉대상 : 국가보훈기본법 제13조제2항제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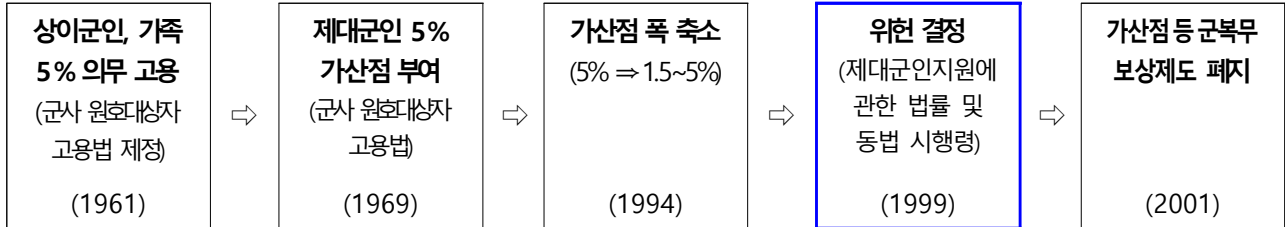
- 국가보훈, 사회보장, 국방, 역사, 교육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국가보훈위원회 연혁

- 범부처 차원의 보훈정책 추진을 위한 국가보훈위원회 신설('05.12월)
- 정부위원회 효율화 방안 일환, 국가보훈위원회 소속이 국무총리에서 국가보훈처장으로 변경('09.5월)
- 국가보훈위원회' 위상강화 추진,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13.11월)
- '국가보훈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해, 보훈부장관소속으로 전환('24.2월)

참고3

군 가산점



- 1961. 7. 5.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5%) 부여
 - 「군사원호대상임용법」, 「군사원호대상고용법」 제정
- 1966. 4.30. 전역 전 6월이내 각종 시험응시자격 부여
- 1969. 9.29. 국·공·일반기업체 채용시험 가산점(5%) 부여
 - 「군사원호대상임용법」, 「군사원호대상고용법」 개정
- 1984. 8. 2. 가산점 제도변경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대 상 : 6급이하 공무원 임용, 기업체 신규자 채용 시
 - 내 용 : 복무기간 2년이상 5%, 2년미만 3% 가산점 부여
- 1997.12.31.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정
 -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가산
- 1999.12.23. 가산점제도 헌법재판소 위헌판결로 폐지

(위헌사유) 여성, 장애인 등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침해

* 헌법 제25조(공무담임권 조항)에 위배('99.12.23., 98헌마363)

- 2000. 1. 4. 채용시험응시 상한연령 연장 및 군 경력 인정
 - 1년 미만 : 1세, 1~2년 : 2세, 2년 이상 : 3세
 - 군 복무 경력을 임금이나 호봉 결정 시 근무경력에 포함

참고4

최근 5년간 의무복무자 전역(소집해제) 현황

□ 현역병 및 보충역 등

(단위: 명)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현역병		247,839	233,463	225,833	197,135	190,188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포함)		930	855	606	640	710
전환 복무*	의무경찰	9,288	6,941	3,018	1,122	-
	의무경찰(해양)	1,275	967	967	376	-
	의무소방원	710	566	486	93	-
	소 계	11,273	8,474	4,471	1,591	-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35,996	34,868	33,816	33,243	30,723
	산업기능요원	11,909	11,268	9,162	8,642	7,020
	전문연구요원	2,612	2,825	2,796	2,528	2,360
	공중보건 의사	1,335	987	1,192	1,287	1,019
	공중방역수의사	148	199	150	148	146
	병역판정 의사	45	49	51	51	51
	공익법무관	178	86	60	54	28
	예술체육요원	10	28	49	29	33
	소 계	52,233	50,310	47,276	45,982	41,380
대체역	대체복무요원**	-	1	2	105	687
합계		311,345	292,248	277,582	244,813	232,255

* 전환복무는 '21년 부터 모집 중단('23년 완전폐지) // ** 대체복무요원은 '20년부터 모집

□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

(단위: 명)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장 교	5,031	5,162	5,606	4,650	4,181
부 사 관	6,517	7,307	8,760	4,962	4,978
합 계	11,548	12,469	14,366	9,612	9,159